

(앞 쪽)

도축검사신청서							처리기간 즉 시
검 사 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③업소명		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	
	⑤주 소	(전화 :)					
도 축 의뢰인	⑥성 명		⑦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⑧업소명		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	
	⑩주 소	(전화 :)					
⑪도 축 목 적							
출 하 농 가	⑫성 명		⑬주민등록번호				
	⑭주 소	(전화 :)			⑮농장명		
⑯접 수 번호	⑰가축의 종류 (품 종)	⑱성 별	⑲연 령	⑳생체량	㉑총수량	㉒개체식별번호	
	예) 소(한우· 젖소·육우·수 입소)	* 가 금 류 제외	* 가 금 류 제외			* 소에 한함	
수입소의 경우 ㉓수출국가명 :			㉔검역계류장 도착일자	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11조제1항 본문·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검사관 귀하							
※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·육우·젖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도축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※ 구비서류 : 없 음					수수료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가관이 정하는 수수료		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m²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